
2026년 지역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공모안내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목 차

1. 추진배경	1
2. 사업 지원내용	2
3. 추진 근거 및 관리 규정	3
4. 추진체계	4
5. 추진 절차 및 일정	5
6. 사업 신청 및 접수	6
7. 평가 절차 및 기준	8
8. 기타 유의사항	11

① (산업)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

- 가상융합산업은 생성형 AI와의 융합, 신규 XR 디바이스* 등장으로 점진적 혁신 지속
 - * 애플(비전프로), 메타(오라이온), 구글(해안), 삼성(갤럭시XR)
- 또한 공간컴퓨팅과 생성 AI 기술의 결합으로 ‘디지털 공간경제’ 개념 부상
- 주요 글로벌 리서치 기관들은 가상융합산업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한국을 핵심 국가 중 하나로 지목

② (정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범 국가적 체계 마련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시행(‘24.8),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을 통한 가상융합산업 강국 도약 초석 마련
- 지역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자격을 갖춘 지역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고시(‘25.9)

③ (지역) 지역 산업 혁신의 중심 가상융합산업 지역 거점 구축 필요

- 지역산업과 XR, 생성형 AI 등 가상융합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지원 필요
- 지역기업을 위한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인프라, 전문 인력양성, 기업육성 및 해외진출 체계적 지원 필요

◆ ① 산업, ② 정부, ③ 지역적 요구에 부응을 위해, 「지역 가상융합 산업혁신센터」 사업 추진

2

사업 지원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업목적	○ 지역별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산업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지원
지원내용	○ 지역 가상융합혁신센터 운영 지원
지원대상	○ (주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기관*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 ※ (필요시) 주관기관과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他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기관 참여 가능(컨소시엄)
대상지역	○ 광역자치단체 ※ 지역 가상융합지원센터 지정 기관이 소속된 광역자치단체
지원기간	○ ('26년) : 2026. 1. 1. ~ 2026. 12. 31. ※ 협약기간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지원규모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최대 14개 이내(광역자치단체별 1개) ○ 각 센터별 394백만원
지원조건	○ (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컨소시엄)은 총사업비에 대해 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매칭비율) 국비 1 : 지방비·민자 1 이상 분담 ※ 국비 349백만원 기준 지방비·민자를 349백만원 이상 매칭 필요 ※ 지방비 출연·보조 협약서 및 민자 부담·출자 협약서 제출 ※ 필요시 현물 계상은 가능하나 참여인력 인건비 등으로 계상
주요 과업내용	○ (테스트베드·장비 구축)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가상융합콘텐츠 제작·실증 등 기술지원을 위한 장비 및 인프라 구축·지원 * 예시1) 지역 특화 산업 단지과 연계하여 지역 가상융합클러스터 조성, XR, AI, 디지털트윈, 공간 컴퓨팅 등 가상융합기술 우수기업 육성 * 예시2) 사무공간 및 첨단 가상융합 인프라를 제공, 콘텐츠 전시 홍보 및 비즈니스 기반 제공 등 ○ (지역기반 서비스 제작·실증) AI 등과 융합을 통해 지역 산업 가상융합콘텐츠 발굴 활성화 * 예시1) 생성형AI 등을 통한 가상융합콘텐츠 개발 기술적·비용적 장벽 완화 및 지역 산업 발전 수준과 보유 자원을 고려한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 예시2) 가상 융합 기술을 통한 지역 특화 산업 단지 스마트화, 수요처-공급처 간 협력을 통한 대형 공동 과제 발굴 지원 ○ (지역 인력 양성 교육) 지역 특화산업별 산업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한 가상융합 기술기반 현장 실무형 전문교육 및 기본이론·실습 등 저변확산 교육 * 예시1)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한 지역 가상 융합 과제 발굴, 지역 내 취·창업 지원으로 지역 인재 확보 * 예시2) 지역 내 소재한 우수 기업과 연계하여 인턴십·재직자 교육 등을 통해 교육생의 실무 역량 강화 ○ (마케팅 지원) 국내·외 수요처와 지역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 가상 융합콘텐츠 제작, 국내·외 진출을 위한 전시 홍보 마케팅 등 지원 ※ 주요 과업내용 중 2개 이상의 과업내용 포함 필수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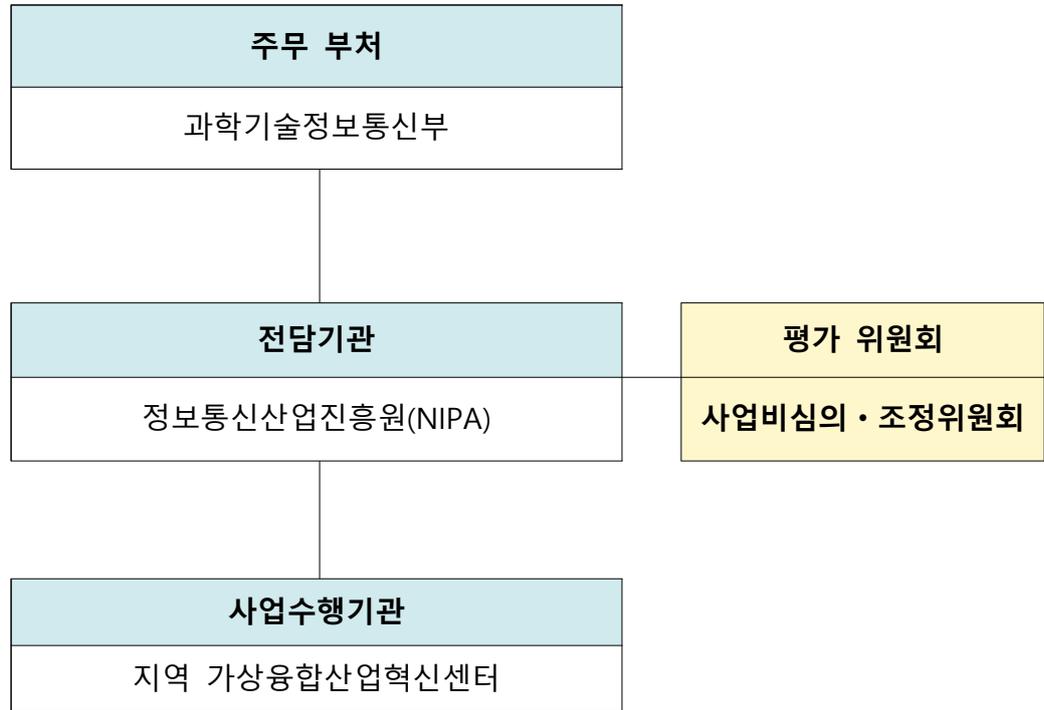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19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3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 관련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요령(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5.01.21.)
- 위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은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준수

4

추진체계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시행계획 총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총괄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사업관리,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과제 수행계획 등 평가 ○ 지원과제 수행결과 등 평가
사업비심의·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사업수행기관 (지역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 사업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등

5

추진 절차 및 일정

준비 단계	과제 모집 공고	'25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문 게시(NIPA 홈페이지)
	↓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과제신청서 접수	'26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접수(NIPA 홈페이지)
	↓		
	사업수행기관 선정평가	'26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		
	사업수행기관 확정·통보	'26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중복성, 실행예산 검토를 통한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			
협약 체결 및 과제 수행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26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사업계획서 등 관련 협약 서류 제출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		
	과제 수행	'26년 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		
	중간점검	'26년 7~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 점검 중간(현장)점검
↓			
	결과 평가	'27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결과보고서 등 제출 수행결과 평가
정산	사업비 정산	'27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지원 내용별 정산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사업공고(www.nipa.kr) → 지역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공모 → ‘사업계획서 작성안내 및 제출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6. 1. 19.(월) 16:00 까지**
 ※ 전산 접수는 2026. 1. 5.(월) 10:00부터 가능
-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사업관리시스템(<https://nxt.nipa.kr>) → 총괄책임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 세부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NXT) 매뉴얼’ 파일참조
 - ※ 접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접수로만 시행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수행기관(주관)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 전산 접수는 사업수행계획서(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사업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숙지)
-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목록		필수 제출 대상	
구분	양식 제공	주관	참여 (필요시)
1. 사업계획서	○	○	X
2. 사업계획 발표자료	X	○	X
3. 지방비 출연·보조 협약서	서식1	○	X
4. 민간매칭(현금/현물) 협약서	서식2	○	○
5. 사업수행기관(주관,참여)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3	○	○
6. 평가항목 참조표	서식4	○	X
7.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X	○	○
8.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2년~'24년) ※ '24년 신고 미완료자는 '24년 결산재무제표 및 세무대리인 으로부터 직인을 받은 재무제표 확인원 제출	X	○	○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X	○	○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	○	○
11.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서식6	○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주관기관이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지원 제외 조치**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보증보험증권,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으로 시스템 기입내용(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일치해야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위 번호에 맞춰 순서대로 파일명 정리 후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예시) 1. 사업수행계획서_주관기관명

2-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주관기관명

2-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_참여기관명

□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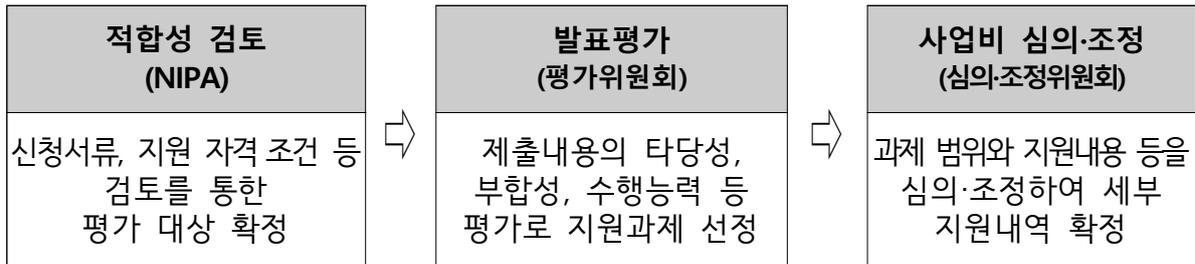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사업 관련	양우진 수석 (ywj@nipa.kr)	043-931-5678
	박지예 책임 (jy7769@nipa.kr)	043-931-5679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NXT시스템 유지보수팀 (nxt_support@nipa.kr)	070-5151-8215 070-5151-8239

※ 전화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시스템관련 문의처"는 전산접수시스템(NXT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 평가 체계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사업비 심의·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적합성 검토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접수 완료 과제 대상)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NIPA 내부검토
- (주요 검토항목) 신청자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사업 수행기관(참여기관 포함)총괄책임자 등 신청자격 적정여부
신청서류	- 사업 수행계획서, 별첨 등 신청서류 적정성, 누락 여부 등
의무사항 이행	-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부도 및 자본전액잠식 여부 ※ (외부감사기업)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여부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 여부 - 채무불이행자 등록여부,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여부
참여제한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등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검토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과제 선정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평가 통과 기관(컨소시엄)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기업(또는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참석을 못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과제 선정
 -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 단, 평가위원 결원등 으로 5인 미만일 경우 전체 평가위원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여 반드시 허락을 득해야 변경 가능(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 내에서만 가능)
 - ※ 사전 허락없이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서면 평가로 진행
 -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컨소시엄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결과 순으로 차순위를 지원함 (단,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지원 규모 및 예산 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관(컨소시엄)
- (심의·조정방법)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 후, 최종 지원 기관(컨소시엄)으로 확정
- (심의·조정위원) 민간 전문가 및 회계사 등 총 5인 내외

□ 평가기준

서면·발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타당성과 정책 부합성 (45)	○ 사업 필요성 및 목표 명확성 - 센터 사업에 대한 이해, 사업취지와와의 적합성 - 지역주력산업과 가상융합 기술 연계성 - 성과지표·목표 명확성	15
	○ 사업 규모 및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가상융합산업분야 인프라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지역 가상융합산업 과제 발굴 및 제작지원의 적절성 - 지역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의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20
	○ 지역 가상융합산업 활성화 기여도 - 국내·외 마케팅 강화지원을 통한 기여도 - 기타 행사 참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한 기여도	10
여건·환경과 재원조달의 적정성 (50)	○ 추진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 - 지역센터 공간 구축 규모, 장비 등 제작지원 인프라 운영 역량 - 사업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 사업 추진 체계의 적절성	25
	○ 사업비 구성 적정성 등 -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의 적합성 - 예산집행 세부 계획의 적절성	10
	○ 지자체의 사업 참여의지 및 기여도 - 가상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도 및 의지	15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5)	○ 지역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여도 - 기타 생태계 기여도	5
계		100

-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순위 확정
 (①여건환경과 재원 조달의 적정성→②사업타당성과 성과 및 정책부합성→③파급효과 및 기여계획)
 ※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사전 지원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신청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접수마감일 현재 기준 조달청 부정당제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사전 지원 제외 대상(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p>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p> <p>※ 상기 자본전액잠식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자본으로 계산 가능</p> <p>※ 회계연도 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 수정된 재무제표와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 가능</p> <p>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p>
조치	<p>·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p> <p>·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p> <p>·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p>

□ 과제 수행 보고 및 평가

- (중간점검) 전담기관은 실태점검을 위해 과제 수행 내역 중간 점검 (현장 방문 등)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이 현저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연차평가) 지원차수 종료 시 제출받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됨
 - 90점 이상 “매우우수”, 80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미흡”, 60점 미만 “매우미흡”으로 평가
 - 평가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받은 과제는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 여부 판정 및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 될 수 있으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 사업수행 관련 제재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